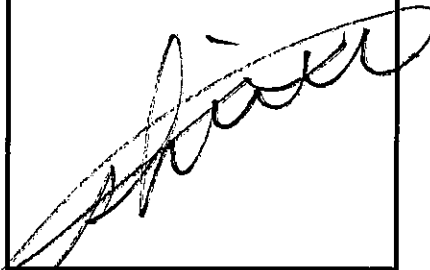


서울을 바라봅니다  
시민을 생각합니다

시장 및 교육감 제출

# 재의요구안 접수 및 처리계획

의 장



No-310



2019. 9.

**서울특별시의회**  
(의사담당관)

# 시장 및 교육감 제출 재의요구안 접수 및 처리계획

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한 재의요구안 3건이 접수되어,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,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함

## □ 재의요구안 접수(3건)

### ①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

- 제출자/제출일 : 서울특별시(2019.9.26.)
- 의안번호 : 관련 802
- 재의요구 사유
  - 2019. 9. 6일자로 의결 및 이송된 「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「지방자치법」 제172조제1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지시함에 따라, 본 조례안을 같은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의를 요구
  - ⇒ 국익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 재검토를 요청(산업통상자원부)

### ②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

- 제출자/제출일 : 서울특별시교육감(2019.9.26.)
- 의안번호 : 관련 803
- 재의요구 사유
  - 2019. 9. 6일자로 의결 및 이송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하여 교육부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재의를 요청함에 따라, 본 조례안을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1항에 의거하여 재의를 요구
  - ⇒ 국익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, 법률에 위임없이 특정기업제품의 구매를 제한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배 소지가 있어 재검토 요청(교육부)

③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

○ 제출자/제출일 : 서울특별시장(2019.9.26.)

○ 의안번호 : 관련 1020

○ 재의요구 사유

- 2019. 9. 6.자로 의결 및 이송된 「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서울시로 「지방자치법」 제172조제1항에 따른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, 본 조례안을 같은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의를 요구

⇒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노동관계법 상 근로자의 정의와 불일치하여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까지 노동관계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되어 현행법에 위배될 우려가 있고, 노동조사관의 조사범위, 조사수행, 시정권고 및 후속조치의 경우 일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됨(고용노동부)

□ 처리기간 :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1항

○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 상정.  
단, 폐회 또는 휴회 중인 기간 미 산입

□ 처리방법 :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,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

○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시 개정 조례안 확정

○ 본회의 상정·의결

- 안건상정 → 재의요구 이유설명(집행부) →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 
→ 질의·토론 → 표결 및 의결

□ 향후계획

○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견조회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라 10일 이내 본회의 상정

붙임 : 재의요구안 각 1부. 끝.